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합512703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6. 6. 13.

판결 선고2016. 6.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7,11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진해건설의 하도급공사 계약

1) 원고(제일모직 주식회사와 2015. 9. 2. 합병하기 전의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하 합병 전 전부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YSS 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여의도 Y22 파크원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4. 진해건설 주식회사(이하 '진해건설'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지하구조물보강공사 등 R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324,700,000원(= 공급가액 8,477,000,000원 + 부가가치세 847,700,000원),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진해건설과 두 차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① 공사대금을 2,246,420,000원 증액하여 11,571,120,000원(= 공급가액 10,519,200,000원 + 부가가치세 1,051,920,000원)으로, ② 공사기간을 2013. 3. 4.부터 2014. 1.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의 주요 내용]

제7조(계약이행보증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원고와 진해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진해건설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진해건설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진해건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 및 계약특수조건 제6호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25조(원고, 진해건설의 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진해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진해건설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기타 진해건설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8. 진해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때

####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진해건설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계약특수조건의 주요 내용]

#### 제5조(원고의 계약해제, 해지)

진해건설이 공사시행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원고는 사전고지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진해건설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파산의 신청을 받아 공사를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공사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 나. 피고의 계약이행보증

1) 피고는 2013. 3. 18. 원고(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3. 3. 4.부터 2013. 8. 31.까지, 계약금액 932,470,000원으로 하여 진해건설이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보증기간 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① 보증금액을 1,157,112,000원으로, ② 보증기간을 2013. 10. 30.부터 2014. 1. 31.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 첨부된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

### 제3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조합은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다만,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전 15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합니다.

### 제6조(보상범위)

-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실제손해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 2. 채무자가 이미 이행한 계약 중 계약내용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다만, 기성검사시 이미 발생한 하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1조(면책조항)

-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

## 다.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지 및 보증사고 발생 통지

- 1) 진해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진해건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하여(인천지방법원 2013카합2046), 원고가 2013. 11. 8. 위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
- 2) 원고는 2013. 11. 11. 진해건설에 대하여 '위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근거와 추진일정을 2013. 11.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진해건설은 2013. 11. 26.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잔여기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진해건설은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3.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45), 원고는 2014. 2. 6.자 공문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진해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변경계약을 위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2014. 2. 13.자 공문을 통해 진해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렸다. 그 무렵 위 해지 공문이 진해건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1,157,1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진해건설이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3. 11. 11.자 서면에 의한 계약최고와 이후 이루어진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초 공사기간의 만료일인 2014. 1. 31.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주위적 주장).

나) 원고의 조건부 해제의사표시가 유효하지 않다면,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기존 공기의 만료(2014. 1. 31.)와 동시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② 원고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직후인 2014. 2. 6. 피고에게 해지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③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인 2014. 2. 13. 진해건설에 대하여 해지통보를 발송하였으므로, 원고의 2014. 2. 13.자 해지통보는 보증약관 제3조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였다(예비적 주장).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당시 남아 있던 공사는 가설자재의 해제 및 반출 작업이었고, 원고는

직접 비용을 들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보증사고로 인하여 총 1,621,092,956원(= ① 원고가 가설자재 일체의 해체 및 반출을 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 장비비, 재재비 등 직접공사비용 648,032,795원 + ② 추가 공사기간 동안 가설재 및 현장사무실 유지·관리비용 가설물 관련 추가비용 973,060,161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피고의 보증금액 1,157,112,000원을 초과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기간은 2013 10. 30.부터 2014. 1. 31.까지인데, 원고는 보증기한 내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원고가 보증기간 내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진हे건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하는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규정된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절차적 요건 결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하도급계약서(본문) 제25조 또는 계약특수조건 제5조의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실체적 요건 결여).

다) 진हे건설이 수행한 2014. 1. 30.까지의 기성고가 계약금액 대비 111.0%에 이르는 것을 보면, 원고는 진हे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없던 추가공사를 우선 시공하도록 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약관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면책된다.

#### **나.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보낸 2013. 11. 11.자 공문(갑 제3호증)은 진हे건설에 대하여 채권자들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근거와 추진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으로, 계약 해지를 전제로 진हे건설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하도급계약서(본문)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서면 형식의 이행최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3. 11. 11.자 서면에 의한 계약최고와 이후 이루어진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법리 이 사건 보증계약의 경우와 같이 주계약의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고, 진혜건설이 주계약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지날 때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만일 주계약의 실제 해제·해지에 의하여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증기간 경과 전에 해제·해지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간 종료일까지 주계약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어 보증사고의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원천적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9933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하도급계약서(본문) 제25조 제1항 제2호는 '부도·파산·기타 진혜건설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존 공사기간 종료일은 2014. 1. 31.이었으나,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미지급, 채권자들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진혜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기존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어렵게 되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의 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 A은 진혜건설의 B에게 진혜건설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면 계약 유지 의사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변경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③ 진혜건설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1. 31.까지 피고가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진혜건설 사이에 변경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2014. 1. 31.에 '기타 진혜건설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④ 보증약관 제3조 제3항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전 15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역시 위 법리에서 실시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진혜건설이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본문)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보증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서(본문)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4. 1. 31.에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② 이는 보증약관 제3조 제3항의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전 15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고, ③ 원고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인 2014. 2. 13. 진해건설에 대하여 해지통보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보가 진해건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④ 원고의 2014. 2. 13.자 해지통보는 보증약관 제3조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보증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가 진해건설에 대하여 해지를 통보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 이행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 공사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진해건설이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해지를 위하여 별도의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이행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다. 원고가 입은 실제손해액에 관한 판단**

1) 보증약관 제6조에 의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은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보증약관 제6조 제2항 제1호)으로 계산된다.

2) 한편, 보증약관 제11조 제1호는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의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주계약에 정해진 용역대금, 용역의 내용 및 수행기간뿐만 아니라 기성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도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는 이에 관한 주계약상의 약정을 기초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기성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주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더라면 손해를 입지 않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기성금 지급시기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채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기성금을 지급한 나머지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약관에 정해진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당초의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해지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후속업체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경우, 도급인이 입은 손해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이 추가로 지출할 비용과 후속업체에게 지출한 비용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 때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이 추가로 지출할 비용은 전체 공사대금에서 당시의 실질적인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이고, 후속업체에게 지출한 비용은 후속업체와 체결한 공사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업체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증가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후속업체에 나머지 공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경우,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후속업체에게 공사를 도급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해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서의 기성고율에 상당하는 기성대금을 먼저 산정하여, 전체 약정금액에서 기성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공사대금으로 공사 중단 시점에서 완공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완공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지급된 공사대금,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의 진해건설의 기성고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감정을 신청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중단된 시점에서의 잔여공사인 '가설자재 일체의 해체 및 반출작업'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만 감정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실질적인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의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원칙적으로 예정된 공정율에 상응하여 기성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수급인이 나머지 미시공 부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여 도급인은 약정공사대금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도급인이 이를 제3자인 후속업체에게 도급주지 아니한 채 나머지 공사부분을 직접 진행하여 완공하면서 예정된 공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잔여공사 부분에 상응하는 미지급 기성대금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출할 필요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미시공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진해건설에 대한 기성금 지급 현황(갑 제15호증)에 의하면, 2014. 1. 30.까지 총 기성고누계가 11,675,770,000원이고, 이는 계약금액 10,519,200,000원 대비 111.0%에 이르는바, 위와 같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기성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아래 다)에서 보는 사정 외에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기성금의 지급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급주기 1개월 1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라는 기성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위배하여 원고가 과다기성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과다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미지급 기성금으로 잔여공사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래 다)에서 보는 지급경위만으로는 약정한 기성고율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어긋나게 과다기성을 지급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은 '진해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진해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해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회생법원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 대비 기성고'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원가(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를 기준으로 공사비가 지급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진해건설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진해건설에게 이 부분 지급금액을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주장의 이 부분 지급금액은 진해건설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계약이행보증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우라옥

판사이원호

판사이인민